

공정위, 2001년 업무계획 국회 정무위에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 2001년 공정위의 업무계획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동 보고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보완,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의 추진, 소비자 권익의 실질적 보호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공정위는 지난 '98. 2월 폐지하였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2001. 4월 순환출자에 따른 폐해 시정을 위해 재도입하여 시행하였다.

동 제도 보완을 위해 2001. 5. 16. 정·재계 간담회에서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개선을 건의하고, 5. 31. 경제장관간담회 등의 논의를 거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과 투자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개선책 마련을 위해 금년 2월부터 6개 분야에 대한 1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카르텔을 적발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공정위는 분야별로 추가 보완조사가 필요하거나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계속할 계획이며, 진입제한 등 독과점요인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여 업종별·업태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리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과 피해구제

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 일괄 구제시스템」을 구축, 피해소비자의 범위를 특정 소비자피해의 정도가 커 제도운용의 실익이 큰 사건에 한정하여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방지를 위해 400여 분야 33만개 약관을 실태조사하여 단계적으로 정비 중에 있으며, 표준약관 제정·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고, 할부구매 소비자의 권리를 확충하고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서민생활 및 영세 중소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1개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요율 담합, 교복제조 3사와 20개 총판·대리점의 교복가격 담합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카르텔 감시를 강화하고, 서민금융 이용자의 권리보호 확대를 위한 사금융업 관련 불공정약관 피해신고의 심사 및 사금융업을 중요정보 고시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중소·하도급업체 보호와 백화점·할인점의 횡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이 소자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맹사업이 가맹점 보호관련 법제의 미비로 피해사례가 급증, 이에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문업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고시 확정 ·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6. 20.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 및 기준」고시를 확정, 이를 예정대로 7. 1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업 불공정거래행위 기준」고시(안)은 4. 13.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에서 ① 목적규정에 신문업 사업자단체의 자율적인 법 준수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 ② 무가지의 허용비율을 경품과 합하여 20% 이내로 확대 조정, ③ 독자에 대한 강제투입 금지기간을 3일 이상에서 7일 이상으로 조정, ④ 신문사와 지

국간의 관계 관련규정을 보강, ⑤ 사업자단체가 자율규약을 제정할 경우 우선적으로 동 규약을 적용하여 처리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 ⑥ 시행일을 7월 1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되었다.

공정위는 향후 신문협회와 자율규약운용방안에 대해 협의하여 고시위반 사안에 대한 처리 절차·방법과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안)」은 본 지의 '부록' (94면 이하)에 게재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방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 정·재계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재계·재경부 등 관계부처 및 학계와 공동으로 [공정거래분야 T/F팀]을 구성, 3차에 걸친 검토를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경제장관간담회 및 당정협의 등의 논의를 거쳐 정부입장을 정리하였다.

동 개선방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구조조정 및 투자활성화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계건의를 수용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동 개선방안으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출자에 관한 사항,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기업 자체 노력만으로는 기한내 해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등에는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예외인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사항 즉,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예외인정 요건 완화, 분사기업에 대한 계열제외요건 완화 또는 출자의 적용제외, 출자총액산정시 취득가 및 장부가 중 낮은

금액 적용, 소유분산 우량기업제도 도입 또는 해소시한 연장, 한도초과 미해소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유예,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자기주식 취득에 의한 순자산 감소의 예외인정, 부실금융 정상화를 위해 취득한 금융기관 주식의 예외인정,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대한 출자적용 제외, 법규상 일정기간 동안

처분이 제한된 신규 등록사 주식의 예외인정, 정부가 사업자로 선정한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적용 제외, 금융기관 지급여력비율 충족을 위한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예외인정 기간 확대, 공기업 민영화 참여지분의 예외인정, 화의·법정관리중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의 예외 인정 등은 개선방안에서 제외되었다.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 완화에 대한 정부·재계간 합의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001. 6. 15~6. 25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동 개정(안)은 자산의 일부를 타회사로 이전,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업양도에 의한 주식취득의 경우도 예외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구조조정과정에서 자본확충을 위해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 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도 예외인정 대상에 포함하며, 합병할 예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예외인정기간 기산일을 다른 구조조정관련 출자와 동일하게 2001. 4. 1.로 변경함으로써 예외인정기간을 통일하고, 신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출자의 경우를 예외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근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인정 범위를 보완 및 확대하고, 부실기업의 독자적인 경영정상화 추진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해 부실기업이 속한 기업집단에서 신속히 계열분리 될 수 있도록 계열분리 요건을 완화하며, 법률 제55조의3의 위임에 의거, 출자총액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세부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초에 공표·시행될 예정이다.

* 동 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는 본지의 '부록' (98면 이하)에 게재하였다.

사금융 불공정약관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5월 중 「사금융피해 신고센타」 접수 피해신고 중 불공정약관 관련 내

용전반을 분석하고, 그 중 불공정협의가 큰 사채업자들을 상대로 2001. 6. 11.부터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업체는 91개 사채업자로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관련조항 내용, 계약서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 위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사금융 피해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채이자율은 연 60%이상의 초고금리 경우가 전체 262 건 중 255건(97.3%)으로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

지하였고, 신고인이 연체이자율을 알고 있는 경우는 36건에 불과하였으며, 사채거래금액은 500만원 미만의 경우가 전체의 67.8%에 달하였다.

공정위는 동 조사를 통해 초고리 사채 약정이율, 연체이자율 조항 등에 대해서는 약관법에 의해 무효화 조치할 예정이고,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약관법 제34조제1항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13개 신문·방송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괄적시장개선대책의 일환으로 13개 언론사(조선, 중앙, 동아, 한국, 대한매일, 한겨례, 경향, 문화, 국민, 세계, KBS, MBC, SBS)에 대해 2001. 2. 12.~4. 20. 부당내부거래행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5,434억원 규모의 부당한 지원성거래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2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 조사결과 주요 특징으로는 신문·방송사와 계열회사간에 자금거래보다 인쇄용역 및 프로그

램제작 위탁, 광고제작 등 상품·용역거래를 통해 지원한 사례가 다수였고, 자금·자산·인력 지원을 통한 지원방법이 30대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조사에서 나타난 지원방법과 유사하였으며, 대부분의 신문사가 인터넷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콘텐츠사용료를 미수령하거나 광고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한편, 일부 계열분리된 신문사의 경우 계열분리 후에도 모기업이 계속하여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11개 손해보험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 5. 30. '11개 손해보험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

기로 결정하였다.

11개 손해보험회사들은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 기본보험료 중 부가보험료가 2000.

4. 1.부터 자유화 된 후 자동차보험료를 정함에 있어서, '업계 자동차업무부장회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자동차보험료율을 2000. 4. 1.자에 대하여는 종전 요율 수준으로, 같은 해 8. 1.자에 대하여는 평균 3.8% 수준으로 각각 결정하여 시행 하였으며, 또한 1999. 11. 1.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분에 대한 특별할증률을 그룹별로 10%씩 인상, 2000. 7. 15. 실시한 한국전력 자동차

보험 입찰에 동일한 가격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공정위는 보험감독당국의 행정지도 사실과 관련하여 동 행정지도가 법령에 명문화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손보사들에게 담합을하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본 건을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하게 되었다.

공정위, SK(주)의 송유관공사 주식취득에 대해 시정조치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 5. 30. SK(주)의 (주)대한송유관공사의 주식취득과 임원겸임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정부의 (주)대한송유관공사 민영화 방침에 따라 정부보유지분(46.47%) 중 36.71%를 기존주주인 정유5사에 매각함으로써 SK(주)는 기존 보유주식에 17.74%를 추가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

본 건 기업결합은 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SK(주)와 석유제품의 유통수단인 송유관의 독점기업인 송유관공사간의 수직결합으로 최대주주가 된 SK(주)가 송유관공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됨으로써 송유관시장에서 경쟁사에 대한 석유수송신청의 거부, 수송신청물량의 제한, 수송순위의 차등, 계약조건

의 차별, 영업정보의 유출 등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유관 이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SK(주)에 대하여 시정조치키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SK(주)는 첫째, 송유관사업자의 석유수송신청의 거부, 수송신청물량의 제한, 수송순위의 차등, 수송요율 및 기타 계약조건의 차별, 영업정보 유출 등의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대한송유관공사 정관에 규정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둘째, 위 경쟁제한행위의 금지와 관련하여 송유관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설치근거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며, 셋째, 사전에 정관에 규정할 내용이나 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위와 협의하여야 한다.

2001년 5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5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5월 1일자로 변동 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으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신규채무보증금지와 상호출자금지 등 각종 공정거

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1년 5월중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는 에스케이, 한진, 포항제철이 신규편입되고, 금호, 두산, 동양화학, 제일제당, 한솔 등 6개사가 계열제외 되어 2001년 6월 1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수는 2001년 5월 2일의 642개사에서 639개사로 3개사가 순감했다.

◆ 2001년 5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개요 ◆

(단위 : 개사)

구 분	2001. 5. 2	편 입				제 외						2001. 6. 1
		회사 설립	주식 취득	기타	계	합병	매각	清算	친족 분리	기타	계	
전 체	642	2	1	-	3	3	2	-	-	1	6	△3
1~4대	198	-	1	-	1	-	-	-	-	-	0	1
5~30대	444	2	-	-	2	3	2	-	-	1	6	△4
												440